

# 한국신학교육연구원 규약

## 제 1장 총 칙

### 제 1조 명 칭

본 연구원은 한국신학교육연구원이라 부른다.

### 제 2조 관 할

본 연구원은 전국신학대학협의회의 관할 아래 둔다.

### 제 3조 목 적

1. 한국의 신학교육이 당면한 상황과 제문제를 광범위하게 연구한다.
2. 한국 교회의 선교적 과업에 관한 이해를 넓힌다.
3. 한국의 역사적, 선교적, 상황에서 신학교육의 갱신을 위한 제반자료를 제공한다.
4. 기존 신학교육에서 갱신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도움을 준다.
5. 신학교육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을 국내에서 개발·육성한다.

## 제 2장 사 업

제 4조 본 연구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신학교육 갱신을 위한 제반 연구 및 출판
2. 신학교육 갱신의 실험적 프로그램 실시
3. 신학교육의 지도력 양성

## 제 3장 기 구

제 5조 본 연구원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

본 연구원의 이사회는 전국신학대학협의회 이사로서 구성하며 이사회는 본 연구원의 제반 정책을 결정하고 연구사업에 관한 임원회의 결정을 인준하며 기타 재정 및 인사 등의 문제를 처리한다.

#### 2. 임원회

본 연구원의 임원회는 전국신학대학협의회 임원으로써 구성하며 본 연구원의 제반 사업을 계획·실시한다.

#### 3. 편집위원회

본 연구원의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을 주관하며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지역 및 전공을 고려하여 임원회에서 추천한다.

#### 4. 원장

원장은 본 연구원의 전반적 행정 사무를 관할하며 전국신학대학협의회 총무가 본

연구원의 원장직을 겸한다.

5. 간사

본 연구원은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 4장 재 정

**제 6조** 본 연구원의 재정은 신학교육기금위원회(Theological Education Fund)가 증여한 기금과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원교의 의무금 및 기타 유지의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 제 5장 부 칙

**제 7조** 본 규약의 개정안은 정기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한다.

**제 8조** 본 연구원의 규약은 1973년 9월 21일부터 발효한다.